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55호
----------	--------

제출년월일 2021. 10.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관내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 시킴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예술창작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안 제4조)
- 나. 공공예술창작소 입주 자격(안 제5조)
- 다. 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자 선정 및 입주 기간(안 제6조)
- 라.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안 제7조)
- 마. 공공예술창작소 사무의 위탁(안 제8조)
- 바. 공공예술창작소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사. 공공예술창작소 포상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 1) 2021년도 제3회 추경 10,500천원 반영
 - 2) 2022년~2023년 : 운영비 도비 1억원 보조(도비30%, 시비70%)
 - 3) 2024년 이후 : 운영비 1억원 편성(시비 100%)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8. 27. ~ 9. 16.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나) 경 기 도 : 문화중무과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창작 욕구 실현을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소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공공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사업)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 자격) 창작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 관내 작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2.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

제6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① 시장은 창작소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②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 모집,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창작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입주자 중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예술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문화예술과 한기정
	팀장 직위·성명	예술팀장 현진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주(☎2318)